
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9. 23.(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건축안전팀	담 당 자	· 팀장 홍성준, 사무관 김부병, 주무관 신현규 · ☎ (044) 201-4988, 4992	
보 도 일 시		2019년 9월 2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23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손끼임,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

- ◆ 온라인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,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
- ◆ 방문 끼임 사고 방지 장치 : 손끼임방지장치 1종 → 문닫힘방지장치 등 추가
- ◆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위치 : 임의 설치 →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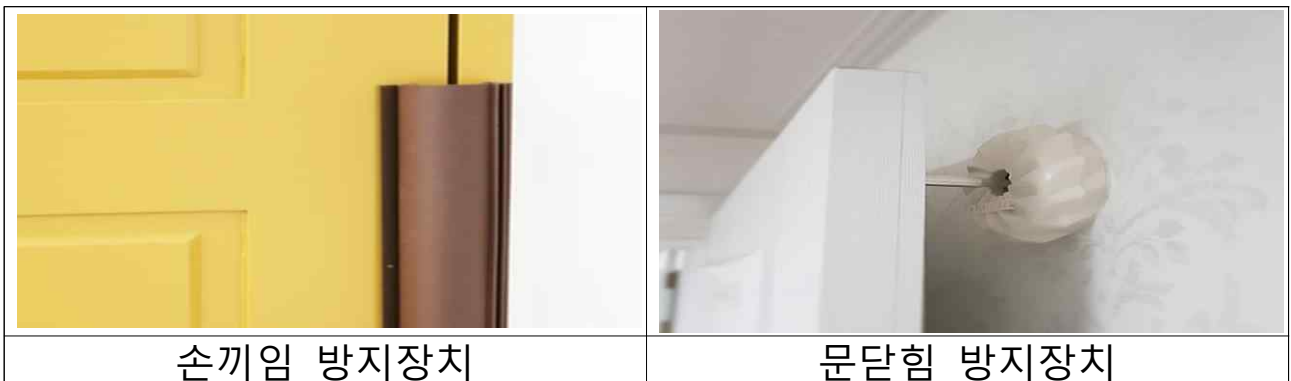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하여 접수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「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구분	지금은	앞으로는
사례 1	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방문에 설치해야 하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미관상의 문제로 임의로 철거하였으나, 아이가 문에 손이 끼어 후회 중이다.	손끼임방지장치 뿐만 아니라, 아파트 방문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 닫힘방지장치 등도 다양한 끼임 방지 장치 설치가 가능해 진다.
사례 2	유치원에 다니는 B씨는 자동문이 고장나 버튼을 찾았지만, 너무 높은 위치에 버튼이 위치하여 문을 개방할 수 없었다.	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이번에 추진되는 「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, 기존의 실효성을 높인다.
 -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,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요구*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.
- * JTBC('18.7.30 밀착카메라), 전자민원, 한국주택협회 건의 등
-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(e.g. 문닫힘 방지장치 등)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<문닫힘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(예시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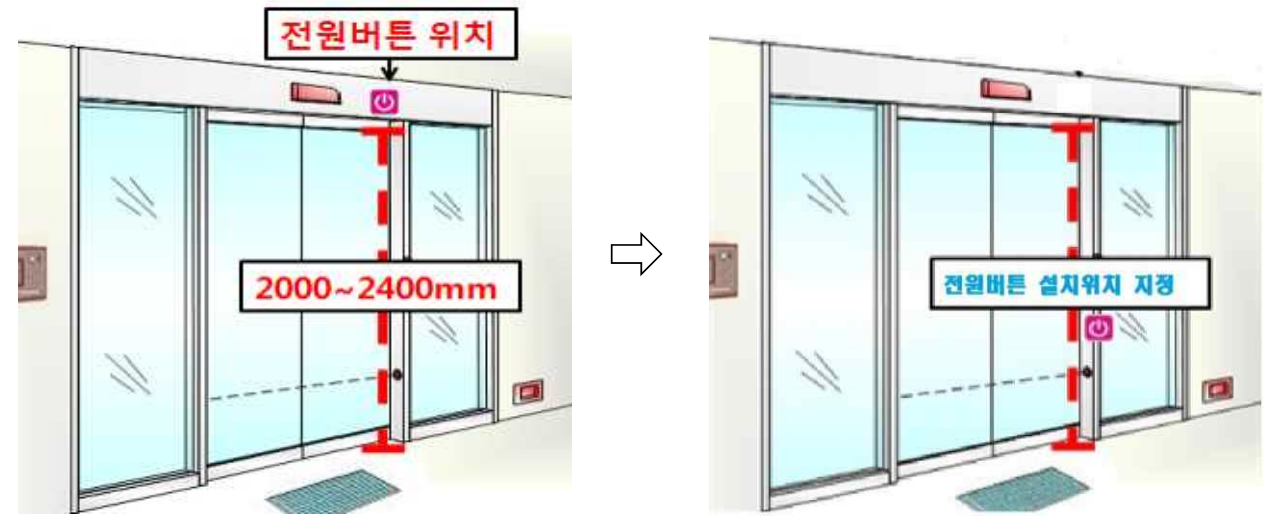
- ②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나,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였는데,
 - 일부 개방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기존 개선 요구*가 있었다.

*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

-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 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(바닥으로부터 0.8m~1.5m)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.

(국민이 지적한 문제 사례)

(국민의 제안을 반영한 개선안)


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,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.” 라고 하면서,
 - “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-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(9.27일~10.17일, 20일간) 후 법제처 협의,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-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 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
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(전화번호: 044-201-4988, 4992 팩스: 044-201-5575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김부병 사무관(☎ 044-201-498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